

2026

운전직공무원 등 도로교통법규

엠북 교통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PDF 전자책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종합정리
- ✦ 최근 개정 및 26년 시행 예정 내용 반영
- ✦ 2시간 12분 완성

도서명 : 도로교통법규

ISBN : 979-11-7393-172-7

발간일 : 2026-01-19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13,000원



도로교통법규

[목차]

제1편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p4)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p14)

제3장 차마, 노면전차의 통행방법(p19)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p36)

제5장 고속도로등 특례(p48)

제6장 도로의 사용(p51)

제7장 교통안전교육(p53)

제8장 운전면허(p58)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p79)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p81)

제11장 보칙(p91)

제12장 벌칙(p97)

제13장 범칙행위 처리 특례(p105)

제2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p107~110)

[용어/약어]

속도의 단위는 시간당 킬로미터

청장은 경찰청장

시도청장은 시도경찰청장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초록색은 최근(1~2년내) 개정 내용

붉은색은 시행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편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1~7조

1. 목적

- 도로상 교통의 모든 위험과 장애 방지/제거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

2. 정의

1) 도로

- 도로법상 도로
- 유료도로

- 농어촌도로
- 불특정 다수, 차마 통행 공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 필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님

3) **고속도로**는 자동차 고속 운행에만 사용

4) **차도**는 연석선, 안전표지나 유사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모든 차가 통행하게 설치

- 연석선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5) **중앙선**은 차마 통행 방향 구분을 위해 도로에 황색 실선, 점선 등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 시설물

- 가변차로 설치된 때 신호기 지시 진행방향 가장 왼쪽 황색 점선

6) **차로**는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

7) **차선**은 차로간 구분 위해 안전표지로 경계지점 표시

8) **노면전차 전용로**는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설치한 도시철도법상 도로나 차로

9)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유사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10)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하도록 안전표지로 표시

1)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 유사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보행자가 통행 - **보행자**는 **폭 1m** 이하인, 차마에서 제외되는 다음 기구/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자와 실외이동로봇 포함

가) 유모차

나)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다) 노약자용 보행기

라) 어린이 놀이기구

마) 동력 없는 손수레

바)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동기자전거), 자전거

사) 도로작업에 사용되는, 사람이 타거나 화물 운송 않는 것

2)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차도 미구분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 가장자리

3)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도록 안전표지로 표시

4) **교차로**는 십자로, T자로, 둘 이상의 도로(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는 차도) 교차 부분

5) **회전교차로**는 차마가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는 원형 도로

- 교통섬은 교차로나 차도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안전 시설

6) **안전지대**는 도로 횡단 보행자, 통행 차마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유사한 인공구조물로 표시

7) **신호기**는 문자, 기호, 등화로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 신호 표시를 위해 사람/전기로 조작

8) **안전표지**는 주의/규제/지시 표지판, 도로 바닥의 기호, 문자, 선

9) 차마

가) 차는

- 자동차

- 건설기계

- 원동기자전거

- 자전거

- 사람/가축, 기타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

· 단, 철길, 가설된 선 이용, 차마에서 제외되는 기구/장치, 실외이동로봇 제외

나) 우마는 교통, 운수 용 가축

20)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 이용

1)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 않고 원동기로 운전

-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 일부로 봄

가) 자동차

- 승용/승합/화물/특수 자동차

- 이륜차

나) 건설기계

2)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없이 주변상황,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관련 모든 장치

- 완전/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이하 **부령**)으로 세분 가능

3)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없이 스스로 운행 가능한, 자율주행시스템 갖춘 자동차

4) 원동기자전거는

- 배기량 125cc 이하(전기 동력은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 이륜차, 원동기를 단 차(단, 전기자전거, 실외이동로봇 제외)

5) 개인형 이동장치는

- 원동기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시 전동기가 작동 않고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 안전확인 신고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6) 자전거는 전기자전거 포함

7)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자전거

8)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9) 실외이동로봇은 **운행안전인증 받은** 지능형 로봇

30) 긴급자동차(이하 **긴급차**)는 본래의 긴급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다음 자동차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범죄수사, 교통단속, 긴급 경찰업무 수행 경찰차

- 마) 군 내부 질서 유지, 부대 이동 유도 국군/유엔군 자동차
- 바) 범죄수사하는 수사기관 자동차
- 사) 체포/호송/경비용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자동차
- 아) 국내외 요인 경호 공무용

자) 신청에 의해 시도청장이 지정하는 다음 자동차

- 전기/가스 등 공익사업 기관이 응급작업
- 민방위 출동
- 도로 응급작업, 자동차 단속
- 전신/전화 응급 수리
- 긴급 우편물 운송
- 전파감시

차) 다음은 긴급차로 봄

- 경찰/국군/주한유엔군 긴급차에 의해 유도
- 위급 환자/부상자 수혈 혈액 운송

1)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는 다음 어린이(13세 미만) 교육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한정면허 받아 어린이 대상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단,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이동 제외)

-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 어린이집
- 학원, 교습소
- 체육시설
- 아동복지시설(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 청소년수련시설
- 장애인복지시설(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외)
- 공공도서관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2) 주차는

- 승객 대기, 화물 적재, 고장 등으로 계속 정지 또는
-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못함

3) 정차는 운전자가 5분내 차를 정지

- 주차 외의 정지 상태

4) 운전은 도로 등에서 차마, 노면전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 조종,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포함

5) 초보운전자는 첫 면허 받은 날, 2년 경과 전 면허 취소된 때 다시 면허 받은 날부터 2년 미경과

- 원동기자전거면허만 받은 자가 이외 운전면허 받으면 첫 면허 받은 것으로 봄

6) 서행은 차,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

7) 앞지르기(이하 추월)은 앞 차 옆을 지나 앞으로 감

8) 일시정지는 차, 노면전차 바퀴 일시 완전 정지

9)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만 다니게 안전표지, 유사 인공구조물로 표시

40)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는 차도/보도 미분리 도로

1) 학원은 자동차등 운전 지식/기능 교육 시설

- 단, 다음 시설 제외

가) 학교에서 소속 학생, 교직원 연수

나) 소속 직원 연수

다) 전산장치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자체 등이 신체장애인 운전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중 시도청장 인정 시설

마) 대가없이 운전교육

바) 운전면허 받은 자 대상 운전경험 체험을 위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교육

2) 모범운전자는

-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 표시장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운전자로서,

-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하는 자

3) 음주운전 방지장치(이하 방지장치 또는 장치)는 취한 상태에서 운전시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다음 세부장치 갖춘 것

- 음주호흡 분석기

- 제어장치

- 운행기록 저장부

- 카메라

4) 약물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 환각물질

5) 기타

- 전용차로는 차종이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

- 전용로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교통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가. 시장등이 설치/관리

- 유료도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도로관리자가 설치/관리
- 시장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지사,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

- 주/야간,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 보행자에 잘 띄게 함

다. 도는 시/군에 설치/관리 비용 전부/일부 보조 가능

라. 시장등은

- 1) 다음 사유로 안전시설 철거, 원상회복 필요시 사유 유발자에 공사 비용 전부/일부 부담하게 함

- 교통사고

- 차/노면전차 운전 등 사람 사상 또는 물건 손괴
- 분할 불가 화물 수송 등을 위해 안전시설 이전/철거
- 안전시설 위법 철거/이전, 손괴
-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로관리청 등이 이전, 철거, 고의/과실로 철거, 이전, 철거, 손괴

- 2) 기간내 미납부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4.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 시도청장, 경찰서장(이하 서장), 시장등은 법 위반 사실 기록/증명을 위해 설치/관리 가능

- 장비 철거, 원상회복 등은 안전시설 규정 준용

5. 신호나 지시에 따른 의무

- 보행자, 차마, 노면전차 운전자는
- 안전시설, 교통정리하는 경찰등과 제주도 자치경찰 신호/지시 따른 것
- 안전시설과 경찰 신호가 다르면 경찰 신호 따름

(참고)

- 경찰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
- 경찰보조자는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공무원
- 경찰등은 경찰과 보조자

6. 모범운전자

가) 모범운전자 상호협력, 교통안전 봉사 위해 **연합회** 설립 가능

- 지자체는 예산내 사업 보조금 지원 가능

나) 국가는

- 예산내 **모자, 근무복, 점퍼 등 복장,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장비** 지원 가능
- 업무 중 부상/사망시 보상 보험 가입 가능

7. 보행자, 차마, 노면전차 **통행의 금지 및 제한**

가) 시도청장

- 필요시 구간을 정해 금지/제한
-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통지

나) 서장

- 필요시 우선 금지/제한 후,
-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금지/제한 대상, 구간, 기간 정함

다) 시도청장/서장은 금지/제한시 공고

라) 경찰

- 도로 파손, 화재 등 위험 방지를 위해 긴급시 필요 범위내 일시 금지/제한
- 뚜렷하게 혼잡 우려시 **교통 혼잡 완화 조치**

8. 고령운전자 표지

- 국가/지자체(이하 국가등)은 제작/배부 가능
- 고령자는 표지 부착하고 운전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8~12조

1. 보행자의 통행

가) 보도/차도 구분된 때 언제나 보도로 통행

- 예외) 차도 횡단시, 공사 등으로 보도 통행 금지, 부득이한 때

나) 중앙선있는 보도/차도 미구분 도로(일방통행이면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 포함)

- 길가장자리 통행

다) 다음은 도로 전 부분 통행

- 중앙선 없는 도로/차도 미구분 도로

· 일방통행이면 차선으로 구분안된 도로에 한정

- 보행자우선도로

- 고의로 차마 진행 방해못함

라) 보도에서 우측통행

2. 실외이동로봇 운전자

- 조작/관리자 포함
- 정확하게 조작 의무
- 교통상황과 로봇 구조/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사람에게 위험/장해 주는 방법으로 운용못함

3. 행렬등

가) 학생 대열, 보행자 통행에 지장 줄 다음 사람/행렬

- 말, 소 등 큰 동물 모는 자
- 사다리, 목재 운반
- 도로 청소/보수 등
- 군부대, 이에 준하는 단체
- 기, 현수막 휴대
- 장의 행렬

나) 차도 우측 **통행**

- 중요 행사로 시가 행진시 도로 중앙 통행 가능
- 경찰은 구간을 정해 도로/차도의 (자전거도로 제외한 부분의) 우측 통행 등 명령 가능

4. 도로의 횡단

가) 시도청장은 횡단보도 설치

나) 보행자는

-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도로 횡단시설로 횡단
- 지체(신체)장애인은 교통 방해안되는 방법으로 횡단시설 이용않고 횡단 가능
- 횡단보도 미설치 도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
- 차/노면전차 바로 앞/뒤로 횡단 금지